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19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7-45호(2017.06.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141호(2021.07.01.) 및 동작구 고시 제2024-14호(2024.02.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60호(2024.05.09.)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나. 면적: 33,154.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

나.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7.06.09.)로부터 13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최초) 2017.06.09 / (변경) 2021.06.24 / (변경) 2024.02.01.**6. 변경의 사유 및 내용**

가. 변경 사유: 건축계획 변경 등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나. 변경 내용

(1) 건축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면적	22,478㎡	22,478㎡	-
건축면적 (건폐율)	5,467.78㎡ (24.33%)	5,467.92㎡ (24.33%)	증) 0.14㎡ -
전체연면적 (용적률)	95,303.0648㎡ (237.44%)	95,892.7483㎡ (237.44%)	증) 589.6835㎡ 지하층 증가
지상연면적	53,372.7712㎡	53,370.9010㎡	감) 1.8702㎡
지하연면적	41,930.2936㎡	42,521.8473㎡	증) 591.5537㎡
층수 (최고높이)	지하3층/지상27층 76.9m	지하4층/지상27층 76.9m	- -
동수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743대	743대	-

7. 기타 관계도서: 생략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507호

건축법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점검 대상	대지 위치	점 검 사 항	비고
1	유한회사송*	사당동 41*-11*	무단 용도변경(다중주택 내 개별 취사시설 설치)	건축과-15731 (2025.8.4.)
2	박*주	사당동 42*-1*	무단 용도변경(다중주택 내 개별 취사시설 설치)	건축과-15727 (2025.8.4.)

2. 공고기간 : 2025. 8. 21. ~ 2025. 9. 5. (15일간)

3.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협조요청

4.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25. 9. 5.까지 (동작구청 건축과)

5. 처분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79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 조사를 위한 방문 예정 통지하오니 공고 기한 내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이 가능한 일시를 우리 구(참조: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조사 거부 및 회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 및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